

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 일부개정 보고

제출연월일 : 2006. 11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□ 개정이유

- 지방공기업법 및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
- 행정자치부의 2006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지침에 의거 정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지방공기업법 및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
따른 정비

1) 공사 사업범위 확대 / 제5조 제1항 제3호, 제4호

-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⇒ 주택재개발 ·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
-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⇒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

2) 사채발행 범위 확대 / 제18조 제1항

- 사채발행 금액

현	행	개	정	안
자본금 및 준비금 총액의 2배범위내		순자산(자산총액 - 부채총액)의 4배이내 또는 10배이내		

※ 지방공기업법 제62조 및 공사설치조례 제33조 개정
에 따라 반영

3) 경영평가방법 일부개정 / 제56조 제1항

- 공사의 경영평가는 시장이 년 1회이상 평가
⇒ 공사의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실시

나. 2006년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지침반영

1) 비상임이사 자격요건 완화 / 제28조 제1항 제5호

- 현재 세무·회계, 경영·법률, 유통·환경, 도시계획·토목·건축전문가로 한정
⇒ 공사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, 대학교수 또는 전문경영인 으로 함
※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0조(임·직원) 제4항과 일치

2) 고문위촉방법 및 고문수당 지급방법 개선 / 제40조 제1항, 제3항

- 현재, 고문위촉 및 고문수당은 이사회 의결 필요
⇒ 고문은 사장이 위촉하고, 고문수당은 “예산범위내에서” 지급토록 함.

□ 참고사항

○ 지방공기업법 제2조(적용범위) 제1항 제1호 ~ 제8호

1. 수도사업(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)
2. 공업용수도사업
3. 궤도사업(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)
4. 자동차운송사업
5. 지방도로사업(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)
6. 하수도사업
7. 주택사업
8. 토지개발사업

○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2조 (사채발행) 제2항 제1호, 제2호

1. 법 제2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10배 이내
2.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

-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8조(경영평가)제1항
 - ①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-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제19조(사업업무) 제1항 제4호
 - 4.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

-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제22조(경영평가)제1항
 - ① 공사의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하여야 하며, 평가결과는 공사의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제33조(사채발행 및 차관)제2항
 - ② 사채발행의 한도는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10배 이내로,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한다.

-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0조(임·직원)제4항
 - ④ 제3항 제5호(기타 관련분야 전문가)의 비상임 이사는 공단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, 대학교수 또는 전문 경영인 중에서 이사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 한다

- 행정자치부 2006년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추진계획
 - 지방공기업 자율경영권 강화

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 일부개정 정관안

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주택재개발·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

4.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

제18조제1항중 “자본금 및 준비금 총액의 2배 범위 안에서”를 “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10배 이내로,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”로 한다.

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.

5. 공사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, 대학교수 또는 전문경영인

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제3항중 “이사회 의결로”를 “예산 범위내에서”로 한다.

①사장은 고문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다.

①공사의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하여야 하며, 평가결과는 공사의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0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사업) ① (생략)</p> <p>1. - 2. (생략)</p> <p>3. <u>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</u></p> <p>4. <u>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</u></p> <p>5. - 18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8조(사채의 발행)</p> <p>① 공사는 필요한 때에는 장관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<u>자본금 및 준비금 총액의 2배 범위안에서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- ④ (생략)</p> <p>제28조(이사) ① (생략)</p> <p>1. - 4.(생략)</p> <p>5. <u>세무, 회계전문가</u></p> <p>6. <u>경영, 법률전문가</u></p> <p>7. <u>유통, 환경전문가</u></p> <p>8. <u>도시계획, 토목, 건축전문가</u></p> <p>② - ④ (생략)</p> <p>제40조(고문) ① <u>사장은 이사회 의결로 고문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고문은 이사회 의결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.</u></p> <p>제56조(경영평가) ① <u>공사의 경영평가는 시장이 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며, 평가결과는 사장의 임명과 공사의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전문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조(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주택재개발·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</u></p> <p>4. <u>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</u></p> <p>5. - 1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사채의 발행)</p> <p>① <u>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10배 이내로,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</u></p> <p>② -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8조(이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공사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, 대학교수 또는 전문경영인</u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② -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0조(고문) ① <u>사장은 고문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예산범위내에서</u></p> <p>제56조(경영평가) ① <u>공사의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하여야 하며, 평가결과는 공사의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삭 제></p>